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6
----------	------

제출일자 : 2024. 3. 1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권역별 운영에 따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사업 방향성 전환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가.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방향성 전환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 안 제7조(운영지원) 조문 中 ‘한국인 주 강사료’ 추가

나. 이용료 징수를 위한 조문 신설

- 이용료 징수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53조, 제156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추경예산 반영 예정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1. 29. ~ 2. 19.)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강사료, 한국인 주·보조 강사료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필요한 경우 교재비 등 수강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 금액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10조제2항 관련)

종류	금액(원)		기간
원어민 영어교실	주 3회	50,000	3개월
	주 2회	4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 강사료, <u>보조강사료</u> 2.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 강사료, <u>한국인 주·보조 강사료</u>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필요한 경우 교재비 등 수강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이용료 금액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제10조(조례의 준용)</u> (생략)	<u>제11조(조례의 준용)</u> (현행과 같음)
<u>제11조(시행규칙)</u> (생략)	<u>제12조(시행규칙)</u> (현행과 같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3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미첨부 근거 규정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예산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

2. 미첨부 사유

가. 남부권 원어민영어교실 결제시스템 구축 : 2,650천원 정도

- 카드단말기 1식 구입 : 약 400천원 / 최초 1회
- 결제대행 수수료 지급 : 약 1,750천원 / 연 1회
- 취소 반환금 지급 : 약 500천원 / 연 1회

3. 작성자 :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장 김재현

